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5645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규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김준혁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8. 11. 20.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기재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2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3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D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소외 회사는 2013. 2.경 원고에게, “원고가 E에게 100,000,000원을 변제일은 원고가 지급 청구한 일자, 지연이자 는 위 변제일 익일부터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채무와 이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7. 12.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 등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용지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F 명의로 취득하고, 위 인허가 후 위 각 부동산 및 인허가에 관한 권리 일체를 소외 회사가 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개발 인허가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F에게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0.경 위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자력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화성시에 수용되었고, 피고가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16,514,515,6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재산권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각종 인허가권을 피고에게 승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제1계약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인 이 사건 제2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161,260,000원(= 100,000,000원 + 이에 대하여 2008. 6. 30.부터 2020. 10. 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1,26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16,514,515,630원에서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7,410,000,000원을 제외한 수익 9,104,515,630원(= 16,514,515,630원 - 7,41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D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한 것일 뿐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부존재하고, 설령 연대보증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3. 2.경부터 기산하여도 10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26.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갑 제4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됨을 전제로 '본 계약은 2017. 7. 12.자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계약과 제2계약의 매매대금이 동일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F 등에게 지급한 5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7,410,000,000원)만을 F 등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제2계약은 F 등의 해지 통보 기한인

2018. 11. 30. 이전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때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적극재산 중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45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는 F 등에게 이미 지급한 59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7,41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갑 제4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은 2018. 2. 9.인데, 소외 회사는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8. 11. 1.경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② F 등은 2018. 11. 1. 소외 회사에게 2018.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점, ③ 피고는 F 등에게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잔금 7,4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제1계약과 별개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제2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에 가까운 2017. 12. 31.경 소외 회사의 자본 총계는 -337,111,449원(= 자산 총계 650,193,767원 - 부채 총계 987,305,216원)으로 F 등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한 자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잔금지급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거나 잔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이 용이한 재산으로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적극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제2계약이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별 지 1]

부동산 목록

- 1. 경기도 화성시 임야 26040㎡
- 2. 경기도 화성시 전 2103㎡
- 3. 경기도 화성시 임야 5411㎡

[별 지 2]

<소외 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

매도인 :

매수인 : 주식회사

매매계약일 : 2017. 7. 12.

매매 목적물 :

1. 경기도 화성시 임야 26040㎡
2. 경기도 화성시 전 2103㎡
3. 경기도 화성시 임야 5411㎡

매매가액 :

계약금 : 590,000,000원

잔금 : 7,410,000,000원

총 8,000,000,000원

